

I . 계획 수립개요

1 근거 규정

□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로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,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2 제도의 의의

□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,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(Rolling Plan)

-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예측가능성 제고
-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 (다년도 예산)
-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·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

3 기본 방향

□ 예산편성과 연계성 강화

- 주요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획 반영 여부를 투자심사·지방채 발행의 선행요건으로 운영 중
-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중요사업 발굴 시 변경제도를 활용하여 예산편성과 연계성 제고 노력 필요

□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

- 인구구조 변화·경제구조 전환 대응 등 지방재정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 필요

□ 불필요한 특별회계·기금 정비 노력

- 최근 성과가 부진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된 기금 및 특별회계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경우 통·폐합 등 정비 추진

4 작성 개요

□ 계획기간 : 2023년 ~ 2027년

□ 작성대상 :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

□ 작성기준

- '23년도 :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'22년도 최종예산을 기초로 작성하되, 최근 3년간 추가경정예산액의 평균 증감률 반영
- '24년도 이후 : '23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·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

□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대상

-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 및 1억원 이상 행사·축제성 사업

□ 계획 수립 체계

